



## 효석문화예술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제출자 : 평창군수

# 효석문화예술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안 번호	399
----------	-----

제출년월일 2017. 11. .

제 출 자 평 창 군 수

## □ 제안이유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효석문화예술촌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함.

## □ 제안근거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 □ 주요내용

### 1. 목적

- 효석문화예술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이효석문학관과 통합하여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이효석 문학사업을 더욱 보존 발전시키고, 지역 자원과 연계된 문화관광자원으로의 역할을 확대 발전시키고자 함.

### 2. 시설현황

구 분	규모	연면적(m <sup>2</sup> )	구 조	내 용	비고
계		1,383.22			
마중	2동	171.93	목구조	관리동, 전시동	신축
생가	3동	86.48	일반 목구조	이효석 생가	기존
문학체험관	1동	498.97	철근콘크리트구조	전시관	신축
외양간	1동	38.46	일반목구조	나귀축사	신축
푸른집1	1동	79.29	철근콘크리트구조	전시관	기존
푸른집2	1동	83.86	철근콘크리트구조	전시관	신축
달빛나귀(전망대)	1동	37.9	철골구조	전시관	신축
꿈꾸는 달	1동	386.33	철근콘크리트구조	전시관(휴게시설)	신축
조형물	4식			나귀, 달, 안경, 만년필	

### 3. 위탁개요

- 관련 법 :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위탁방법 : 이효석문학관 통합운영
- 위탁기간 : 2018. 1. 1 ~ 2019.12.31.
  - \* 이효석문학관 민간위탁 기간(이후 통합 공개모집)
- 추진방법 : 운영·관리비용 전액 지원, 사용료 및 관람료 전액 세입처리
- 추진절차
  - 운영계획 수립 및 방침결정(2017. 6.)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조례 개정 (문화관광과) → 변경계약 → 공증 → 사무·시설 인수인계 → 지도 감독

### 4. 통합 민간위탁 운영 기대효과

이효석문학관과 상호 보완·연계되는 시설로 별도 관리위탁 추진시 통합대표 및 관리인력 중복 채용에 따른 불필요 예산 투입 및 운영의 효율성 저하

- 이효석문학관과 효석문화예술촌의 통합 대표 운영
- 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 절감 효과
- 이효석문학관, 효석문화제 연계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각종 문학 테마 이벤트 개최 활성화

### 5. 향후일정

-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문화관광과 진행중) : 2018. 1.
- 이효석문학관 민간위탁 변경계약(조례개정 후) : 2018. 1.
- 협약내용 공증 : 2018. 1.
- 사무 및 시설 인수·인계 : 2018. 1.
- 시범운영/개관 : 2018. 2. ~ 3./ 2018. 4.

### 5. 참고자료

- 효석문화예술촌 시설현황, 운영 수익추계, 관계법령 발췌서

□ 효석문화예술촌 시설현황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sup>2</sup> )		소 유 자	비고
				지 적	편 입		
계(17필지)		-	-	20,118	0	-	
1	봉평면 창동리	529	전	2,078	2,078	평창군	
2	〃	529-4	하천	13	13	평창군	
3	〃	533-10	구거	26,866	2,261	농림수산부	
4	〃	533-25	구거	552	552	기획재정부	
5	〃	573	대	337	337	평창군	
6	〃	574	전	4,857	3473	평창군	
7	〃	574-1	대	2,332	2,332	평창군	
8	〃	574-3	전	384	384	평창군	
9	〃	574-4	전	899	899	평창군	
10	〃	574-5	전	135	135	평창군	
11	〃	574-6	전	593	593	평창군	
12	〃	575	답	2,136	2,136	평창군	
13	〃	575-1	도로	489	468	건설교통부	
14	〃	575-2	하천	214	214	평창군	
15	〃	575-3	답	2,136	2,136	평창군	
16	〃	576	전	2,098	2,098	평창군	
17	〃	579-1	도로	195	9	건설교통부	

○ 시설조서

- 건축물

(단위 : m<sup>2</sup>)

연번	건물명	지번	대지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내용	비고
	계		10,316	1,042.38 1,383.22			
1	마중	575-3	498	171.93 171.93	목구조	관리동, 전시동 (2동)	신축
2	생가	533-25	6,361	86.48 86.48	철근 콘크리트	생가(3동)	기존
	나귀 전시장	573 574		38.46 38.46	철근 콘크리트	당나귀 축사 (1동)	증축 (신축)
	문학 체험관	574-1		498.97 498.97	철근 콘크리트	전시관(1동)	증축 (신축)
		574-3					
		574-4					
	푸른집1	574-5		79.29 79.29	철근 콘크리트	전시관(1동)	기존
574-6		83.86 83.86	철근 콘크리트	전시관(1동)	증축 (신축)		
3	달빛 나귀	575 575-3	1,408	37.90 37.90	철골	전망대(1동)	신축
4	꿈꾸는 달	529	2,049	155.77 386.33	철근 콘크리트	전시관·휴게시설 (1동)	신축

- 조형물

연번	명 칭	규 격	구 조	비 고
1	나 귀	2,230*1,900*980	스테인레스	
2	달	D=8,000, H=9,500	H빔, FRP	
3	안 경	3,300*3,300	브론즈	
4	만 년 필	2,920*260	브론즈	

## □ 이효석문화예술촌 운영 수익추계(통합)

### ○ 일반현황

- 지원내용 : 인건비(10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관리인력) 운영관리 1, 시설관리 2, 사무관리 2, 매표 4, 청소 1
- 시설현황

시설명	세부시설	규모	위치
이효석문학관	전시실, 관리동, 화장실, 주차장 등	부지: 32,987㎡ 건물: 974.95㎡	봉평면 창동리 544-3번지(일원)
효석문화예술촌	관리동, 생가, 근대문학 체험관, 푸른집, 달빛나귀 전망대, 꿈꾸는 달(휴게시설), 조형물 등	부지: 20,118㎡ 건물: 1,383.22㎡	봉평면 창동리 575-3번지(일원)

### - 입 장 료

(단위 : 원)

구 분	이효석문학관	효석문화예술촌	통합권
일 반	2,000	3,000	4,500
단 체	1,500	2,000	3,000
군 민	1,000	1,500	2,000

### ○ 총괄 추정액(연간)

(단위 : 천원)

수입	지출	손익	비고
352,464	456,722	- 104,258	

\* 유료관람객 10만명(예상), 입장료 수입(문학관 30%-3만명, 예술촌 20%-2만명, 통합권 50%-5만명)

\* 별도 운영시 지출 559백만원(문학관 237, 예술촌 322), 통합운영시 103백만원 절감

### ○ 수입내역(추정)

(단위 : 천원)

항 목	내역	연간금액	비고
계		<b>352,464</b>	
입 장 료	이효석문학관(A표) 2,000원×30,000명=60,000천원 효석문화예술촌(B표) 3,000원×20,000명=60,000천원 통합권(C표) 4,500원×50,000명=225,000천원	345,000	
판매시설 사용료	동이카페 3,505,130원(건물사용료)+1,938,440원(부지사용료) +544,357원(부가세) = 5,987,920원 꿈꾸는 달 806,590원(건물사용료)+535,540원(부지사용료) +134,223(부가세) = 1,476,350원	7,464	동이카페 (기존운영) 꿈꾸는달 (신규)

○ 지출내역(통합운영)

(단위 : 천원)

구분	지출항목	2018년 위탁금	비고
계		456,722	
인건비(10명)	운영관리자	30,000	6급6호봉(월 2,500천원)
	시설관리 팀장	22,967	8급5호봉(월 1,913천원)
	시설관리 보조	18,845	신규
	사무관리 팀장	21,931	8급4호봉(월 1,827천원)
	사무관리 보조	18,845	신규
	대표관리(4명)	67,968	신규(2)
	청소관리	16,992	신규
	환경정비 인부	9,036	
	4대보험	21,140	
	퇴직적립금	10,798	
	<b>소계</b>	<b>238,522</b>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	14,000	
	정수기 임대료	2,000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5,500	
	사무소모품	10,000	
	영문도록 제작	15,000	
	자료발간	1,500	
	소식지 발간	10,000	
<b>소계</b>	<b>58,000</b>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64,000	
	상하수도	8,400	
	전화 및 인터넷	2,700	
	무인경비 용역	14,600	
	<b>소계</b>	<b>89,700</b>	
시설장비유지비	전기안전점검 용역	4,000	
	화장실 청소관리	3,800	
	대표포스기 관리	800	
	시설물 수리보수	27,000	
	화장실 소모품	10,000	
	당나귀 관리	3,000	
	생가이영 교체	6,500	
	문학관 환경정비	7,000	화분꽃식재, 잔디등
	전시자료 보존액	2,400	
	환경조성	6,000	메밀꽃밭, 화단, 제초
<b>소계</b>	<b>70,500</b>		

## □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3.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